

(20 년도)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(갑)

(3쪽 중 제1쪽)

관 할 시·군·구		납세의무자성명 (법인명 또는 단체명)	주 민 등 록 번 호 (법인 등 사업자등록번호)
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(단위: m², 원)

구분	해 당 연 도(년)		직 전 연 도(년)	
	감면 후 공시가격	부과된 재산세액	감면 후 공시가격	① 표준세율 재산세액
합계				

번호	소 재 지	② 지목	③ 공부면적	④ 과세면적	해 당 연 도(년)			직 전 연 도(년)	
					⑤ 개별공시 지가	⑥ 감면 후 공 시가격	⑦ 부과된 재 산세액	⑧ 개별공시지가	⑨ 감면 후 공시가격
1									
2									
3									
4									
5									
6									
7									
8									

작성방법

※ 이 서식은 동일 시·군·구에 소재하는 물건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.

- 1. ① 표준세율 재산세액: 다음의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를 참고하여 소유자별로 [재산세과세표준(= 직전연도 감면 후 공시가격 합계금액 ×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) × 세율 - 누진공제액]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.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분의 70입니다.

[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 세율표]

과세표준	세율	누진공제액
5천만원 이하	0.2%	0원
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	0.3%	50,000원
1억원 초과	0.5%	250,000원

- 2. ② 지목: 토지의 실제 사용현황 지목을 적습니다. 예) 대지, 공장용지,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 등
- 3. ③ 공부면적: 소유하는 지분에 관계없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상 총토지면적을 적습니다.
- 4. ④ 과세면적: 공부면적에 소유지분율과 (1-재산세 감면율*) 곱한 면적을 적습니다.
*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·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재산세 감면율 및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재산세 감면율
- 5. ⑤ 개별공시지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해당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(㎡)당 가액(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
- 6. ⑥ 감면 후 공시가격: (④ 과세면적 × ⑤ 개별공시지가)을 적습니다.
- 7. ⑦ 부과된 재산세액: 해당 연도 종합합산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적습니다(다만, 「지방세법」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은 제외합니다).
- 8. ⑧ 개별공시지가: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전 연도에 공시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(㎡)당 가액(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)을 적습니다.
- 9. ⑨ 감면 후 공시가격: (④ 과세면적 × ⑧ 개별공시지가)을 적습니다.

